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발의연월일: 2020. 5. .

발 의 자: 김기석 위원 외 1명

1. 주 문

가.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

[관 련 법 령]

■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19. 7. 1.] [대통령령 제29609호, 2019. 3. 12., 일부개정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

[시행 2019. 8. 8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44호, 2019. 8. 8., 일부개정]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

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